

2020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추경예산개요

1. 세 입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4,191억 3천 3백만원 대비 425.5% 증액(1조 7,833억1천7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증감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19,133	419,133	2,202,450	2,183,317	1,783,317	11,411.3%	425.5%	
시 세	12,950	12,950	12,950	0	0	0.0%	0.0%	
세외 수입	경상적	1,268	1,268	1,268	0	0	0.0%	0.0%
	임시적	11,682	11,682	11,682	0	0	0.0%	0.0%
보조금	2,391	402,391	2,185,708	2,183,317	1,783,317	91,314.0%	443.2%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	3,792	3,792	3,792	0	0	0.0%	0.0%	

2. 세 출

-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6조 3,832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3조 9,824억 4천 2백만원 대비 60.3% 증액(2조 4,007억 9천 4백만원)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					증감률		
	증감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3,582,442	3,982,442	6,383,236	2,800,794	2,400,794	78.1%	60.3%	
행정 관 리	소 계	295,590	695,590	2,796,384	2,500,794	2,100,794	846.0%	302.0%
	행정운영경비	126,214	126,214	126,214	0	0	0.0%	0.0%
	사업비	169,376	569,376	2,670,170	2,500,794	2,100,794	1,476.5%	369.0%
교 부 금	3,286,852	3,286,852	3,586,852	300,000	300,000	9.1%	9.1%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3,761,291	3,761,434	6,162,085	2,400,794	63.8%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25,329	25,329	25,309	△20	△0.1%

장기국외훈련	3,701	3,701	3,645	△56	△1.5%
단기국외훈련	2,750	2,750	2,030	△720	△26.2%
국내위탁교육훈련	4,416	4,416	4,267	△149	△3.4%
직장교육활성화	839	839	739	△100	△11.9%
직원 후생복지 지원	2,447	2,447	2,270	△177	△7.2%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02	2,002	1,902	△100	△5.0%
연수원 운영	6,788	6,788	6,768	△20	△0.3%
시·자치구공동협력 사업	3,000	3,000	-	△3,000	△100.0%
자치회관 운영 및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17,111	17,111	16,363	△748	△4.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추진	2,990	2,990	2,629	△361	△12.1%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752	752	732	△20	△2.7%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2,314	2,314	2,299	△15	△0.6%
조정교부금	3,286,852	3,286,852	3,586,852	300,000	9.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400,000	400,000	2,506,281	2,506,281	526.6%

II.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은 2조 2,024억 4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4,191억 3천 3백만원 대비 425.5% 증액(1조 7,833억1천7백만원)된 수준이며,
 - 이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국고보조금(4,000억원)은 지난 4월 29일 사전 잠정통보되었으나, 서울시 기초생활대상자의 현금지급을 위한 자치구 교부일정(5월 4일)을 맞추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음.
 - 지난 5월 1일 간주처리한 국고보조금(4,000억원)은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른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한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시의회 심의권을 훼손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처리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는 바, 행정국은 간주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긴급재난지원금 추진일정

- | | |
|-------------------------------|---------------|
| ○ 국고보고금(4,000억원) 사전잠정통보 | 20.4.29.(수) |
| ○ 국고보고금(4,000억원) 간주 | 20.5.01.(금) |
| ○ 국고보조금 1차 세입처리 | 20.5.04.(월) |
| - 1,091,658,286천원 (별첨: 교부통지서) | |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구 1차 교부 | 20.5.04.(월) |
| - 400,000,000천원 | |
| ○ ‘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 ~20.5.08.(금) |
| ○ 국고보고금 2차 세입처리(예정) | 20.5.08.(금) |
| - 938,826,126천원 예정 | |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구 2차 교부 | 20.5.11.(월)이후 |
| ○ 국고보고금 3차 세입처리(예정) | 20.5.18.(월)이후 |
| - 152,832,160천원 예정 | |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구 3차 교부 | 20.5.18.(월)이후 |

2. 세출예산 검토

-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5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2조 5,062억 8천 1백만원과 “조정교부금” 3,000억원 등 2건에 총 2조 8,062억 8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장기국외훈련” 사업 등 13건에 총 54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가. 교육훈련 사업 관련

- 서울시 공무원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훈련(장기국외훈련단기 국외훈련국내위탁교육훈련직장교육활성화)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교육 훈련 등이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기정 예산(117억 6백만원) 대비 10억 2천 5백만원 (8.7%)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최종 (20.4.20)		증감	비율
장기국외훈련	3,701	3,701	3,645	△56	△1.5%
단기국외훈련	2,750	2,750	2,030	△720	△26.2%
국내위탁교육훈련	4,416	4,416	4,267	△149	△3.4%
직장교육활성화	839	839	739	△100	△11.9%

① 장기국외 훈련 사업

- 동 사업은 서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정기여도가 높고 잠재력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에서 훈련하는 사업으로 금번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주요 훈련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들의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및 입국금지 조치중인 바,

2020년 파견예정자중 11명의 파견시기가 8월 이후로 연기가 예상되어 훈련자 체재비(5천 2백만원) 및 의료비(4백만원) 등이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하려는 것임.

[최근 3년 추진실적]

2018년도	○ 파견 현황 : 34명 파견완료(직무24명, 학위10명)
2019년도	○ 파견 현황 : 32명 파견완료(직무21명, 학위11명)
2020년도	○ 파견 현황 : 11명 파견완료(직무11명)

- 다만, 현재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8월 이후에도 국외훈련 파견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계획 변경 및 추가감액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장기국외 훈련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2017년 1억 1천 2백만원→2018년 7천 7백만원→2019년 1억 1천 2백만원)하고 있는 바, 실제 국외훈련자들의 출국 및 귀국 계획에 따른 실소요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2020년 4월 28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7	3,554,850	0	0	3,554,850	3,442,819	0	112,031
2018	3,659,263	0	0	3,659,263	3,582,026	0	77,237
2019	3,547,291	0	0	3,547,291	3,428,024	0	119,267

② 단기국외 훈련

- 동 사업은 단기간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시정과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글로벌정책체험 프로그램 축소(당초 : 80팀⇒변경 : 40팀)운영 계획에 따라 미집행 예산액(항공료 및 체제비)을 감액(7억2천만원)하려는 것임.
- 행정국은 ‘글로벌정책체험’사업의 경우 당초 80개 팀에서 40개팀으로 축소운영 할 계획에 있는 바, 코로나 펜데믹 지속에 따른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와 미운영에 따른 추가감액 여지는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단기국외 훈련’ 사업중 글로벌 정책체험을 제외한 다른 연수 프로그램(기획연수·함께연수·특화연수)에 대해서는 추진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바, 펜데믹 지속에 따른 상황속에서 동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 단기국외 훈련 추진실적]

2018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41명 파견 - 기획연수 6팀 96명, 함께연수 6팀 90명, 글로벌정책체험 72팀 399명, 특화연수 11팀 56명
2019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19명 파견 - 기획연수 6팀 94명, 함께연수 4팀 60명, 글로벌정책체험 77팀 438명, 특화연수 8팀 37명
2020년도	

나. 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예산 관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억 7천 7백만원,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사업의 ‘사무관리비’ 1억원 등 2건의 사업에 2억 7천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

〈공무원 복지 증진 세부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20 예산		추경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최종 (20.4.20)		증감	비율
직원 후생복지 지원	2,447	2,447	2,270	△177	△7.2%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2,002	2,002	1,902	△100	△5.0%

-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동호회 활동 지원금’ 및 ‘시도 공무원 체육대회’ 등 공무원 복지 증진 관련 사업의 취소 및 축소 등에 따른 불용 예상 사업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임.
- 다만, 공무원의 복지증진은 정규보수 이외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편익으로써, 양질의 우수인력들을 확보·유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업무에 따른 피로 누적과 근무의욕 및 사기 진작차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직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직원 건강관리와 체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청사 등의 운동지원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금번 코로나19에 따른 체력단련실 중단(2개월)에 따른 강사료(6천만원) 및 소모품 예산(1천만원) 등 총 1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임.

[본관 · 서소문청사 인력배치 현황 : 직원 5명, 강사 24명]

시설명		운영인력	운영프로그램	인력배치
본관	사무실	3(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 직원 3명 배치
	운동처방실	6(운동처방사)	재활·교정프로그램 운영 아침, 저녁 (2명), 점심(1명) 장애직원 특별프로그램(1명)	· 전문강사
	GX-Room	2(강사)	요가/필라테스 강습(아침)	· 전문강사
		2(강사)	요가 강습(점심)	
		1(강사)	요가 강습(1명, 저녁)	
		4(강사)	줄바덴스(1명, 저녁)	
			탁구(2명)	
배드민턴(1명)				
헬스시설	3(트레이너)	근력운동 및 그룹운동 지도	· 강사	
서소문 청사	사무실	2(직원)	체력단련실 운영	· 직원 2명 배치
	운동처방실	3(운동처방사)	재활·교정프로그램 운영 아침, 점심(1명)	· 전문강사
	헬스시설	3(트레이너)	근력운동 및 그룹운동 지도	· 전문강사

- 월 외부인력 소요비용 : 월30백만원(총 24명 : 운동처방사 9, 트레이너 6, GX강사 9)

- 다만, 체력단련실 운영 중단에 따라 강사들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서울시 공무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인 프리랜서 스포츠 강사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이 열악한 바, 운영 중단 및 업무공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되고,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 현재 코로나 19에 따른 엄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제도 운영이 필요 하다고 하겠음.

다.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은 기정 예산(3조 2,868억 5천 2백만원) 대비 3,000억원 (9.1%)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586,852,018	3,286,852,018	300,000,000
자치구조정교부금	3,586,852,018	3,286,852,018	300,000,000

※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를 근거로 시세의 일정액을 활용하여 합리적 자원배분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을 완화함으로써 자치구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구의 여러 여건에 맞춘 기본적인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임.

- 금번 조정교부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2019년도 조정교부금 예·결산차액분 (4,194억원)중 결산절차 완료 전에 자치구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사업비로 우선 3,000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19년도 보통세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결산차액〉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A)	결산액(B)	결산차액(B-A)
조정교부금(C×22.6%)	31,099	35,293	4,194
계(C=A+B)	137,609	156,165	18,556
보통세(A) ¹⁾	136,074	154,598	18,524
취 득 세	42,738	55,908	13,170
주 민 세	5,450	5,790	340
자동차세	11,321	9,401	△1,920
레 저 세	1,310	1,282	△28

담배소비세	5,652	5,654	2
지방소비세 ²⁾	17,218	18,503	1,285
지방소득세	52,386	58,059	5,673
지난연도 보통세(B)	1,535	1,567	32
취 득 세	111	221	110
주 민 세	27	60	33
자동차세	884	699	△185
지방소득세	513	587	74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근거 재산세 제외
2)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2호 근거 지방소비세 6% 부분 중 지방교육세분 제외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명분과 자치구의 현금지급 유동성 부족사태 방지를 위한 측면에서는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결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결산정산 관련 조정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교육청 조례상 전출금 교부와 시기를 일치 시킬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관련 조례상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있고, 현 자치구 재정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교부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예산계상) ①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통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추경 편성 전후 자치구별 교부액 비교표〉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2020년 추경액	증가액
조정교부금	32,869	35,869	3,000
일반교부금	29,582	32,582	3,000
종 로 구	514	570	56
중 구	136	152	16
용 산 구	608	673	65
성 동 구	993	1,103	110
광 진 구	1,200	1,324	124
동 대 문 구	1,507	1,653	146
중 량 구	1,660	1,829	169
성 북 구	1,895	2,086	191
강 북 구	1,666	1,825	160
도 봉 구	1,636	1,797	161
노 원 구	2,244	2,482	237
은 평 구	1,822	1,998	175
서 대 문 구	1,289	1,421	131
마 포 구	907	1,005	97
양 천 구	1,344	1,487	142
강 서 구	1,656	1,826	170
구 로 구	1,566	1,721	155
금 천 구	1,160	1,271	111
영 등 포 구	789	873	83
동 작 구	1,267	1,393	126
관 악 구	1,791	1,964	173
서 초 구	88	96	9
강 남 구	0	0	0
송 파 구	475	531	56
강 동 구	1,368	1,503	135
특별교부금	3,287	3,287	0

- 첫째, 2020년도 당초예산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106.6%)가 이미 6%를 초과하였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반영(109.5%)시 9.5%를 초과하게 되는 바, 2015년 개정된 조정교부금 교부율(보통세의 21%→22.6%)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교부율 개정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교부금 추경시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변화〉

구 분	'20년도 교부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20년도 교부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A)	'20년도 추경 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B)	증감 (B-A)
강남구 포함	71.1%	106.0%	109.5%	3.5%p
강남구 제외	64.1%	100.8%	104.5%	3.7%p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보통세의 21%→22.6%) 관련 조례 개정 경위〉

※ 2015년 조례 개정시 시장 지시에 의해 조례 개정을 위한 소관 상임위나 의장단에 업무보고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교부율을 명시(22.78%)하여 인상을 기정사실화 발표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시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심각히 저해한 사안임.

○ 추진경위

- 2015. 7. 21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 조정교부율 인상 합의문(「지방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일방 발표

※ 조정교부율 인상(현행 21% → 조정 22.78%)

※ 2016년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달성 목표로 인상안 도출(2015년 97.1%)

※ 2016년도 추가 지원되는 조정교부금 : 2,862억원

- 2015. 10. 30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출 (현행 21% → 조정 22.76%)

- 2015. 11. 9 관련 조례 및 예산 의회 의결 전 각 자치구로 조정교부금액 가내시

- 2015. 12. 21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 진통 끝에 관련 예산안과 함께 조례안 의회 의결(현행 21% → 조정 22.6%(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 기준)로 수정 가결)

※ 재원조정교부금 인상 관련 주요 쟁점

- ①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해도 한번 인상한 교부율 인하 어려움
- ② 복지 수요 및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교부율 상향 조정과 같은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 개정 변경보다는 재정보전 등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조정교부금 목적(자치구간 균형발전) 훼손)
- ③ 자치구간 재정지원 형평성 문제(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구는 혜택 미비)
- ④ 추가적인 재원확보 노력 없이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은 시 재정여건(정상적 지출 과다) 만을 어렵게 하여 광역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 아울러,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기준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 비용에 의한 기초 수요액 산정이 실제 수요액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과도한 결산차액(4,193억원) 발생시 자치구 재정에서 조정교부금이 차지 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자치구의 경우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바, 당초 보통세의 적정 세입추계 및 조정교부금의 적기 교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정산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A)	결산액 (B)	결산차액 (B-A)	비 고
'15년도	22,213	25,585	3,372	◦ '16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과 416억원 상계)
'16년도	23,915	28,566	4,651	◦ '17년 추경 전액 정산 ('10년 초과교부금 잔액 416억원 상계)
'17년도	26,444	30,897	4,453	◦ '18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8년도	29,214	33,241	4,027	◦ '19년 추경 계상하여 전액 정산
'19년도	31,100	35,293 (가결산)	4,193 (예정)	◦ '20년 추경 계상하여 정산 예정

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2조 1,833억 1천6백만원) 지급결정에 따라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은 기정 예산(국비 4,000억원) 대비 2조 1,062억 8천 1백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2조 5,062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분담액은 3,230억원 규모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2,183,316,571천원) 2,506,281,324천원	(x400,000,000천원) 400,000,000천원	(x1,783,316,571천원) 2,106,281,324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183,316,571천원) 2,506,281,324천원	(x400,000,000천원) 400,000,000천원	(x1,783,316,571천원) 2,106,281,324천원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 당초 정부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재원 부담에 있어서 정부 보조율을 80%로 산정하되, 서울시만 70%의 정부 보조율을 적용하여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 정부안 기준 보조율: 평균 78.3% (지방 80%, 서울 70%)
- 국회에서는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지원 대상을 전국민 100%로 확대하되 지급대상 확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국회에서 의결하였음.

※ 국회 의결(2020.4.30.):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 가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4조 6천억원을 증액하여 12조 2천억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지급대상 확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은 없도록 하였음.



서울시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모든 시민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보완적용
 <참고 : 총 4,354,006가구, 3월 말 주민등록 기준 / 전국 22,613,882가구>

구분	계	1인	2인	3인	4인 이상
가구 수	4,354,006 (100%)	1,779,065 (40.9%)	928,798 (21.3%)	766,761 (17.6%)	879,382 (20.2%)

- 신청주체 : 대상 가구의 세대주(주민등록표) 신청 원칙
 -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사업기간 : 5.4(월) ~ 6.18(목)
- 지원금액 :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신용·체크카드,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택일)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지원시기 : 신청 접수 후 2~3일 소요
- 신청 및 지급수단 :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지급수단 다양화
 - 고령·장애 등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별도 실행

구분	신용·체크 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 (홈페이지)	○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연계 은행창구)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모바일	×	○ (어플 다운 후 신청)	×

- 다만,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및 자치구간의 재원 분담비율과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다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2조 6,671 억원(중앙정부 21,833 : 서울시 3,230 : 자치구 1,608)으로 확정되어 집행예정이나,
 - 국회의 정부예산안 수정의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 지원금 분담에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율은 86.1%로, 서울시의 81.9%와 비교해볼 때, 여전히 서울시 부담 비율이 높게 책정되었는바, 해당분담비율의 적정성 여부 및 정부안 산정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보조율) 평균 85.4% (지방 86.1%, 서울 81.9%)

- 또한,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국비(81.9%)와 지방비(18.1%)의 분담비율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분담비율(시비 : 지방비의 3분의 2, 구비 : 지방비의 3분의 1)이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와 함께 각 자치구의 재정여건 및 서울시의 재정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둘째, 소요예산 중 긴급재난지원금, 발행비용, 인력운영비 등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동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바, 동 운영비에 대해서도 매칭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 별도의 동 운영비 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할 필요는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소요예산 : 총 2조 6,671 억원 (國 21,833 : 市 3,230 : 區 1,608)
 - 긴급재난지원금 : 26,598억원 (國 21,782 : 市 3,211 : 區 1,605)
 - 발행비용 : 26억원 (國 22 : 市 3 : 區 1)
 - 인력운영비 : 34억원 (國 29 : 市 3 : 區 2) [※ 동당 인력 3명 × 1개월 기준]
 - 市 별도 동 운영비지원 : 13억원 (전액 市 13)

○ 한편,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수단별 신청 및 지급방안, 대상자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주요 추진 일정(안)]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구 분	주관	5월						6월	
		5.4	5.6	5.8	5.11	5.18	5.31	6.1	6.18
대상자 조회 사이트 운영	행안부								
기초생활수급자 현금지급	자치구	현금 지급							
신용 체크카드 인터넷 신청	카드, 은행 홈페이지								
신용 체크카드 은행창구 신청	은행 창구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서울시 (한결원)								
선불카드 신청	주민센터								
찾아가는 신청	주민센터								
콜센터 / 이의신청 전담창구	자치구/ 주민센터								

① 긴급지원 필요 가구 현금지급 관련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가구 기준과 일치하는 약280만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5월 4일 부터)이나 방문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좌번호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임.

- 다만, 사업추진에 있어 현재 서울시 현금지급 대상자 중 3월 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와 기존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을 확인해야 하는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현금 수령이 지연 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증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좌오류 발생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5월 8일(금)까지 현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② 지원금 사용 관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지역 및 업종제한 범위가 존재하므로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3개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인 바, 서울시민들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 제공 및 홍보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③ 기부 관련

-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될 수 있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될 계획인 바,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문화 정착에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어 ‘오블리스 노블리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연말소득 공제 등 관련 세제 혜택과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당초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신청, 접수, 지급절차, 기부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생계와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1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개요]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생계 가구 기준)				
지급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 ※ 사회 취약계층 대상 현금 선지급				
대상자 조회	'5.4. ~ 6.18. / 온라인 페이지 : 긴급재난지원금.kr				
지원금 신청	방식	<신용·체크카드 충전_카드사, 은행창구>		<상품권, 선불카드_지자체>	
		온라인 (카드사)	오프라인 (은행창구)	온라인 (제로페이)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5.11.~5.31.	5.18.~6.18.	5.18.~6.18.	5.18~8.18
	절차	①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은행) 신청서 접수 ④(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문자)	①별도 접수페이지 접속 ②신청서 입력 ③(자치구) 신청서 접수 ④(자치구) 지급준비 알림(문자) ⑤상품권 PIN 번호수령	①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②신청서 작성 ③(자치구) 신청서 접수 ④(자치구) 지급 알림(문자) ⑤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5.18.~6.18.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절차 : ①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읍면동) 방문·접수 후 시군구 통보 → ③(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④(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이의 신청	절차	①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②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③(동) 관련 자료를 자치구에 전달 → ④(자치구) 가구가구원 조정 → ⑤(자치구) 대상자DB 수정 → ⑥(자치구) 지급대상자 여부 변경 통보 → ⑦조정결과에 따라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기간	5.4.~6.25			
사용	범위	- 신용·체크카드 : (지역제한) 서울시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지역제한) 서울시 (업종제한) 기존 상품권 범위 적용			
	기한	~8.31			
5부제 운영	- 범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은 지급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 제외 가능 - 방식 : 출생년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참고자료 2 - 市 재난긴급생활비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비교표]

市 재난긴급생활비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p>소득하위 70%(중위소득 100%) 가구별 30 ~ 50만원 기초생활수급 등 중복수혜 불가 당초 예상 : 총 117만 가구</p>	수혜대상	<p>전 국민 100% 대상 가구별 40 ~ 100만원 기초생활수급 등 중복수혜 가능 예상 가구 : 430만 가구</p>
<p>①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② 무기명 선불카드 중 1가지 선택</p> <p>※ 10% 할인 적용으로 추가지급</p>	지급방식	<p>① 취약계층(생계급여 등) 현금 입금 ②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부여 ③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④ 무기명 선불카드 취약계층은 ①, 그 외 ② ~ ③ 중 택 1</p> <p>※ 10% 할인 미적용</p>
<p>신청 → 가구(세대) 조회 → 소득 조회(행복e음) → 카드재복지 등록 → 발급</p>	심의절차	<p>가구별 지급액 명부DB 확정(복지부) → 신청 → 대상자 확인(서울) → 발급</p>
<p>온라인 신청 : 3.30 ~ 4.15 주민센터 방문 신청 : 4.16 ~ 5.15</p>	신청방식	<p>카드사 온라인신청 : 5.11 ~ 5.31 은행창구 방문신청 : 5.18 ~ 6.18 서울사랑상품권 온라인 : 5.11 ~ 6.18 주민센터 방문 신청 : 5.18 ~ 8.18</p>
<p>기부금 신청 없음</p>	기부허용	<p>① 전부 및 일부 기부금 가능 ② 지원금 미신청시 기부한 것으로 의제</p>
<p>① 서울사랑상품권 : 자치구 범위에서 가입된 소상공인 업체 ② 선불카드 : 서울시내 범위에서 대형마트 등 제외, 온라인 결제 허용</p>	사용제한	<p>① 서울사랑상품권 : 서울시내 범위에서 가입된 소상공인 업체 ② 선불카드 : 서울시내 범위에서 대형마트 등 제외, 온라인 결제 불허</p>
<p>~ 8.31</p>	사용기간	<p>~ 8.31</p>

긴급재난지원금 자치구 교부내역(1차) - 5.4일 1차 교부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금회 교부금	비 고
계	25개구	400,000,000,000	
1	종 로	6,178,880,120	
2	종 구	5,258,067,962	
3	용 산	9,630,277,555	
4	성 동	12,466,015,249	
5	광 진	14,513,436,104	
6	동대문	13,902,128,600	
7	중 량	15,859,008,234	
8	성 북	17,530,340,716	
9	강 북	12,312,930,360	
10	도 봉	13,023,608,434	
11	노 원	20,998,037,922	
12	은 평	18,996,383,502	
13	서대문	12,606,932,238	
14	마 포	15,804,886,238	
15	양 천	18,437,677,467	
16	강 서	24,338,113,580	
17	구 로	16,483,783,799	
18	금 천	9,514,339,101	
19	영등포	15,985,546,313	
20	동 작	16,349,962,610	
21	관 약	20,911,786,500	
22	서 초	18,414,421,463	
23	강 남	23,644,172,338	
24	송 파	28,415,689,580	
25	강 동	18,423,574,015	

마.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국외여비에 대한 검토

-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를 일괄 감액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사무를 수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또한 이러한 취지에 맞춰 ‘국외여비’를 감액 조정하고 있는 설정임.
- 그럼에도 행정국 산하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국외자원봉사대회’, ‘서울동행 해외프로그램’, 해외연수 등 총 3개 사업에 편성된 해외 연수 관련 국외여비 예산은 감액 조정하지 않고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종합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외여비’ 감액 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해외연수(봉사활동) 등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당초예산	집행액 (집행율)	향후계획 (자원봉사센터)
계	180,700	0	
국외자원봉사대회 등 참여	12,000	0	- 센터 직원 직무교육 등 국내 교육훈련으로 계획 변경
서울동행 해외프로그램 (해외봉사 및 국제교류)	158,700	0	- 동행대학생 국내봉사활동으로 계획 변경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활동	10,000	0	- 코로나 19 진행상황 확인 후 해외연사 초청 컨퍼런스 진행으로 계획 변경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